

#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관리자		책임자	대표이사
	담당(부)	책임(정)		
선 영	박 서 우	이 호	김 성 완	표 경 원
서 영				



## 전 문

애경케미칼(이하 "회사)은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 및 경영시스템을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급망의 ESG 경영 실천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제1장 총 칙

### 1. 목적

애경케미칼은 애경그룹의 '사랑과 존경'의 기업 이념 및 협력사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급망의 ESG 경영 실천과 사회/환경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협력사와 함께 영위하고자 본 정책을 제정한다.

###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협력사와 협업하는 애경케미칼의 구성원 및 거래 계약 시 애경케미칼 협력사 행동규범에 동의한 협력사에 적용된다.

### 3. 정의

- 3.1 "공급망"이란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등 회사와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임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 3.2 "협력사"란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등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 3.3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3.4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공급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 제2장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행 방안

### 1.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점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최초 업체등록 시 '애경케미칼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급망 ESG 리스크 점검

회사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ESG 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3. 고충처리 프로세스 운영

회사는 업무 협력 중 발생하는 문제나 불만사항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

## 제3장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 1. 공급망 ESG 평가

회사는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공급망 ESG 평가(이하 "평가")를 수행한다.

#### 1.1 평가 수행 부서

평가는 구매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1.2 평가 대상 선정

정식으로 거래중인 협력사 중 거래금액과 ESG 중요도, 리스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년도 우선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 1.3 평가 주기

연 1회 실시를 기본으로 한다.

#### 1.4 평가 방법

서면평가 또는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로 구성하며, 내부 ESG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1.5 현장실사

서면평가 결과 ESG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문 또는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하여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 및 인터뷰 등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6 리스크 식별 및 개선

평가 결과 확인된 실질적 · 잠재적 ESG 리스크에 대해서 협력사에 개선 계획을 요청하고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1.7 거래제한 등 검토

ESG 리스크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의 ESG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해당 업체와의 거래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

### 1.8 결과 보고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최고경영진에게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 조치 등에 대한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제4장 협력사 행동규범

### 1. 인권 및 노동(LABOR & HUMAN RIGHTS)

#### 1.1 강제 근로 금지

협력사는 법적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든 근로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근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지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퇴사하도록 하거나, 질병, 일시적 장애 등의 경우에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및 인력 알선 업체, 하청업체)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과 등과 신분 관련 문서를 보관, 파기, 은닉, 압수할 수 없으며, 취업의 일환으로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1.2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만 15세(또는 협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을 위험한 작업 또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 1.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포함한 현지 법규에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자에게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 급여 공제를 포함한 보상제도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합니다.

####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언어/육체/정신적 폭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1.6 차별 금지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혼인 여부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1.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 존중

현지 법규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근로자 대표가 근무 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등 위협이나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2. 안전보건(SAFETY & HEALTH)

### 2.1 산업 안전

협력사는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한 후,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통제하기 위해 공정 설계, 기술/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 2.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2.4 유해인자 노출 방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해인자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2.5 신체 부담 업무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 수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평가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직무 순환, 스트레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2.6 설비 안전 관리

협력사는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련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개정하고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2.7 위생 및 주거 시설 제공

협력사는 작업장, 위생 관련 장소, 주거 시설 등 근로자의 소재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시설을 보건안전 리스크 및 오염 리스크가 없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사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을 비롯한 안전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 3. 환경(ENVIRONMENTAL)

#### 3.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 등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3.2 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자재 재활용/재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등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 3.3 유해 물질 관리

협력사는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른 라벨링 등을 통한 표기 및 별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 3.4 폐기물과 폐수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 후 배출/폐기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5 대기오염 관리

협력사는 공정상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및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현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 3.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3.7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 4. 책임 있는 광물 관리(RESPONSIBLE SOURCING MINERALS)

### 4.1 비윤리적 광물 사용 금지

인권 유린,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관련 광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관련 광물'은 분쟁광물,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하는 광물과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 5. 윤리경영(ETHICS)

### 5.1 윤리경영 준수

협력사는 애경케미칼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고 반부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5.2 정보 공개

협력사는 모든 업무 및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 인권, 안전보건, 환경 관리, 경영활동, 재무현황 및 성과 정보를 관련 법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5.3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 5.4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5.5 기업정보 보호

협력사는 업무 중 알게 되는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및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5.6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6.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

### 6.1 경영진 준수 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경영진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문서로 표현하여 사업장에 현지어로 게시해야 하며, 경영진은 행동규범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6.2 법규 및 고객 요구 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법률, 규정,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 6.3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환경, 안전, 노동, 준법, 인권, 윤리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한 뒤, 이를 통제, 관리하여야 합니다.

### 6.4 목표 수립 및 관리

협력사는 환경적, 사회적 성과 및 안전보건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6.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 등에 대해 근로자, 협력사, 고객과 소통해야 합니다.

## 6.6 임직원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행동규범의 개선에 활용해야 합니다.

## 6.7 감사 및 평가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 및 고객 요구 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6.8 개선 프로세스 운영

협력사는 본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확인 된 미비점을 적시에 시정하여야 합니다.

## 6.9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문서와 기록의 작성, 유지에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6.10 공급망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본 규범을 통해 애경케미칼이 지향하는 윤리/환경/사회적 기업경영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애경케미칼은 공급망 전반에서 본 정책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 ] (이하 “**당사**” 라 한다.)는 애경케미칼 주식회사(이하 “**귀사**” 라 한다.)와 거래함에 있어 귀사의 ESG 행동규범 실천에 적극 협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귀사의 ‘협력사 행동규범’ (이하 “**본 행동규범**” 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제1조 행동규범 준수

- ① 당사는 본 행동규범을 숙지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귀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② 당사는 귀사와 거래하는 협력사로서 본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 행동규범 및 본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귀사가 그 위반 정도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취하는 거래 물량 제한,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2조 조사 등의 협조 의무

- ① 당사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자가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하거나 필요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영업활동,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 등이 침해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전에 귀사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② 당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귀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관련 시설, 자료, 인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③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귀사에게 통지한 후 시정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반 사항 및 이의 조치 사항에 대해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귀사가 요청한 기간 동안 보관하겠습니다.
- ④ 당사는 당사의 협력사에게도 본 행동규범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위반할 경우 지체없이 귀사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력사에게 본 행동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제3조 기타

- ① 당사는 본 행동규범이 귀사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② 당사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과 본 행동규범 간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행동규범이 우선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사가 보관하고, 1부는 귀사에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 ]

주 소 : [ ]

대표이사 : [ ] (인)

애경케미칼 주식회사 귀중